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4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4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“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”에 따른 정원의 증원
-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정원의 증원(안 제2조)
 - 정원의 증원(4명) 558명 → 562명
- 한시정원(안 부칙 제2항)
 - 한시정원의 기한 : 2002. 12. 31.

3. 참고사항

- 설치근거
 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
『경남도 행정 12200-10210(2002. 2. 5)』
 -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운영지침
『경남도 행정12200-12299(2001. 12. 14)』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9조

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558명”을 “562명”으로 하고 “545명”을 “54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.12.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.1.1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

